

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

의 회 은 영 위 원 회

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

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감사의 목적

1998년도 예산(안)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함.

2. 감 사 기 간

1996. 11. 29 (토) (1일간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○ 의 회 사 무 처

4. 감사반 편성

위 원 회 별	감 사 반 장	감 사 위 원	보 조 자
의회운영위원회	김 재 근	이 길 하 김 춘 식 박 상 수 송 욱 순 이 민 희 이 병 철 이 선 호 임 현 용 최 중 철	전문위원 김 재 평 직 원 고 행 준 속 기 사 광 윤 경 안 인 욱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대 상 기 관	대 상 장 소	감 사 방 법
11. 29 (토) 10 : 45 ~ 12 : 00	의회사무처	의회운영위원회실	○현황보고청취 ○정 책 질 의 ○자 료 심 사 ○기 타

6. 주요감사실시내용

- 예산집행 사항
- 의회대의 홍보실적 및 활성화 사항
- 청원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

7. 감 사 결 과

가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- ① 예산집행질적이 저조하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.
- ② 의정홍보는 가급적 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할 것.
- ③ 조례제정 및 개정에 있어 사전에 의원들이 자료수집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부할 것.
- ④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 의원연찬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연찬이 되도록 할 것.
- ⑤ 정례협의회 날 운영에 있어 회기중에 운영하는 것보다,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을 얻을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 운영토록 할 것.
- ⑥ 독립된 전산체계화를 보완 기록에 남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토록 할 것.

나. 건의사항

- ① 홍보활동이 미진하므로 적극 홍보토록 할 것.
- ②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.